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6.(화) 오전 11:00(국무회의 종료)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쪽 (붙임 6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5.(월)	담당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담당과장	인정숙(02-2100-6341)	담당자	정진현 사무관(02-2100-6354)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6일(화) 국무회의 통과 -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7월 13일부터 시행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절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과 범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 등 시행령에 규정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6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7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경우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고,
  -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되며,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 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 또한,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 한부모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하여 그 지급액을 구상하던 것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붙임】 1. 웹포스터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 조문대비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7.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7.6(화) 국무회의 통과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 등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 사망 등은 출국금지 해제요청 대상자임



**명단공개**

명단 공개는 공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실종선고, 파산선고, 양육비 전부 이행 등인 경우 명단 삭제



**강제징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그 지원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안 제9조)

현행	개정안
<p>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 ⑤ (생략)</p> <p>&lt;신설&gt;</p>	<p>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u></li> <li>2. <u>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u></li> </ol>
<p>제9조(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p> <p>① <u>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 구상금액 납부 통지를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제9조(긴급지원 지급액의 징수) ① <u>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징수사유</u></li> <li>2. <u>징수금액</u></li> <li>3. <u>납부기한</u></li> <li>4. <u>납부기관</u></li> <li>5. <u>분할납부 가능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u></li> </ol>

<신 설>

<신 설>

②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지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급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2.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의5제1항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생략)

③ ~ ⑤ (생략)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의 장(제18조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요청철회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